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6. 7.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제56조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학점인정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조(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관할관청에 신고 된 본 과정 모집인원으로 한다.

제4조(모집방법)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학점인정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출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법령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자격인정 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모집전공별로 실기고사, 구술고사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7조(등록) 학점인정 과정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소정의 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업 및 수업일수) 학점인정 과정의 등록생은 본 과정에 개설된 학점인정과정에서 수업하며,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평가 인정된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0조(교과목 이수단위)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고, 실험·실습·실기 등은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단, 학점 당 기준 강의시간은 최소 4주 이상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학점 신청) 학점인정 과정에 등록하여 신청 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학업성적)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및 평소 학습성적으로 종합 평

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실습·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성적평가) ①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며, 평가방법은 따로 이를 정한다.

② 개설된 교과목은 A등급(A+, A0)의 비율을 30% 미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상대평가 원칙에서 제외 한다.<신설 2016.7.28.>

등 급	배 점	평 점	비 고
A ⁺	95 ~ 100	4.5	
A ⁰	90 ~ 94	4.0	
B ⁺	85 ~ 89	3.5	
B ⁰	80 ~ 84	3.0	
C ⁺	75 ~ 79	2.5	
C ⁰	70 ~ 74	2.0	
D ⁺	65 ~ 69	1.5	
D ⁰	60 ~ 64	1.0	
F	0 ~ 59	0	

제15조(학점인정)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시켜야 하며, 학점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해당 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할 것
2. 해당 과목의 성적이 DO 이상일 것

제16조(학점취소) 일단 인정한 학점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이를 취소한다.

1. 학점인정과정 입학자격이 안 된다고 판명되었을 때
2.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제17조(졸업취소) 일단 졸업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1. 전조의 사유에 의해 학점취소를 당한 자
2. 타 교육기관에서의 학점이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제18조(졸업인정학점)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취득학점이 2년제 80학점 이상일 것
2. 총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의 학점이 15학점 이상일 것
3. 총 취득학점 중 전공과목의 학점이 45학점 이상일 것
4. 전공필수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할 것

제19조(학위수여요건) ① 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우리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총8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50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13.7.1.>
 4. 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및 동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시간제 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이 총18학점 이상인 자. 단, 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학습과정 이수, 교육과정 이수 및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연간 42학점(학기 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 ②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 및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우리 대학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우리 대학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제20조(학위수여) ① 제19조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3.7.1.>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의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

제21조(학위신청) 제18조 내지 제19조의 내용을 충족하는 자가 우리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학위 수여 신청서(소정양식)
2. 학점 이수증명서(본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제외)

제22조(학위수여 심사)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한 학위수여 심사를 위해 학위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학위수여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학위수여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학적 관리) ① 학점인정 과정 등록생에 대하여 별도의 학적관리를 하며, 재학증명서, 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우리 대학에서 학위를 수여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청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업무지침”에 따라 학습자의 학점인정 내역 및 성적자료를 학적팀으로 이관하여 학위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대학 학칙을 준용한다.

제25조(상담실운영) 상담실 창구를 반드시 따로 지정하여 정해진 담당자가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 부터 시행한다.